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61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영배 · 민병덕 · 서삼석
손명수 · 문진석 · 박수현
이재정 · 이학영 · 홍기원
이재강 · 정태호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 자. (생략) <u><신설></u> <u>차. (생략)</u>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 ② (생략)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u>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자. (현행과 같음) <u>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u> <u>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u> <u>원 정책</u> <u>카. (현행 차목과 같음)</u>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u> <u>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u> <u>종합하여</u> -----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
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
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 연수 · 교육 · 문화 · 홍
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 · 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
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

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